



제 426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어선건조·개조업 단속 및 등록 수수료 부과〉
■ 서천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09798호

2025. 6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전문위원 최선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어선건조·개조업자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 및 등록수수료 부과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서천호의원 등 10인

2. 제 안 일 : 2025. 4. 14.

3. 회 부 일 : 2025. 4. 1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.

다만,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·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,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,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·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,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·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(안 제37조의2, 제39조).

Ⅲ. 검토의견

1. 어선건조·개조업자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 및 등록수수료 부과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어선건조·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·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, 제39조)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의2(위반행위에 대한 지도·단속 등) ① (생략)	제37조의2(위반행위에 대한 지도·단속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<u>어선중개업자</u> 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	② ----- <u>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·개조업자</u> ----- ----- -----.
제39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대행기	제39조(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관”이라 한다)이 총톤수의 측정·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. 1. · 1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~ 15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 <u>1의3.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</u> 2. ~ 1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--	---

나. 검토의견

(1) 지도·단속 근거 마련 및 등록수수료 부과

□ 국회는 2024년 12월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어선법 일부개정법률」을 의결하여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¹⁾.

- 해당 개정을 통하여 ① 어선건조·개조업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었고, 영업정지·등록취소 등 제재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(제11조·제12조), ② 어선건조·개조업자로 하여금 어선검사를 받은 어선에 대해 임

1) 어선법 일부개정법률: [시행 2025. 12. 21.] [법률 제20601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의로 선체·기관·설비 등을 변경·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‘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’(제23조제2항)가 부과되었음.

이는 어선건조·개조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·육성하는 한편, 어선건조·개조업자가 어선검사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어선의 불법 건조·개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.

- 그런데 이와 같은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어선건조·개조업자에게 필요한 지도·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여,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태 유지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등 등록제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정책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.

또한,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없어, 등록제로 영업의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음.

이에 개정안은 어선건조·개조업자에게 필요한 지도·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.

- 이와 관련, 개정 「어선법」은 어선건조·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 등록을 위한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,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부과

하고 있으므로,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의의가 있어 보이고,

또한, 현행법 제37조의2제2항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지도·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어선의 불법건조·개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선건조·개조업에 대해서도 지도·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므로, 개정안에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- 다음으로, 수수료는 공법상 급부·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신청, 등록, 발급, 검사, 허가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,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참고로 관련 입법례를 보면, 「수산업법」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등에서 해당 법에 따른 면허·허가·승인·등록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·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어선법」에서도 어선등록,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각종 등록·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.

수수료 부과 관련 입법례
「수산업법」 제102조(수수료) 이 법에 따른 면허·허가·승인·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(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이나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(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「어선법」 제39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

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이 총톤수의 측정·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.

1.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
- 1의2. 제8조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·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
2.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
3.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
4.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
5.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
6.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
7.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
8. 제22조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
9. 제22조 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
10.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
11.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
- 11의2. 제2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
- 11의3.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
12. 제28조 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
13.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
- 13의2.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
- 13의3.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
14. 제37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「선박안전법」 제12조 제1항·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·도면승인을 신청한 자
15. 제41조 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·검정증서·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

□ 관계 부처의 의견으로, 해양수산부는 어선건조·개조업에 대해 필요한 지도·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어선건조·개조 등록 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

안의 취지 및 내용에 공감한다는 의견임.

(2) 부 칙

□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2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개정 「어선법」의 시행일이 2025년 12월 21일인 점을 고려하여, 해당 법과 시행일을 맞추려는 취지로 이해됨.

- 이와 관련, 해양수산부는 등록제의 시행일과 개정안의 시행일을 동일하게 하려는 개정안 부칙에 동의한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02)6788-5422

참고 1

어선건조업 등록제

□ 도입 목적

- (안전관리) 누구든 어선건조가 가능하여 일정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어선설계 및 건조가 이루어져 어선의 안전성* 우려

* 어선은 건조과정 등을 포함하여 어선검사를 통한 제작품을 관리하는 방식이나, 검사 후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불법증개축 지속

- 어선검사 후 어획량 증대를 위한 불법증개축이 만연하여, 어선의 항행 및 조업시 안전이 우려되나 불법증개축 건조업자 처벌은 불가*

* 불법증개축을 잘하는 조선소가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며, 조선소에 대한 처벌규정無 / 일부조선소는 연매출 100억대로 처벌규정으로는 실효성 한계(現최고 처벌 3천만원 수준)

- (산업관리) 어선 건조는 탄탄한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의 확장성*에도 불구하고, 대형조선소와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

* 국내 : 매년 약 3,000 여척이 새롭게 건조되며, 약 5.8천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/ 해외 : (인나) 76만척 어선 보유, (필리핀) 별목규제로 선질개량 중(木→FRP) ⇒ 동남아시아 시장 수요大

- 조선(造船)은 규모화·자동화 될수록 효율적이거나 어선건조는 대부분 영세한 수준*으로 고비용·저효율 어선이 양산되며 자체적 개선은 한계

* 영세한 조선소는 야외에서 천막수준으로 운영되거나, 야산에서 건조 후 트레일러 등을 통해 건조된 어선을 해안으로 이동하는 등의 열악한 상태

- ☞ 어선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, 불법증개축 시에는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, 자격을 갖춘 경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노력 병행하여 안전강화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

□ 향후 계획

- 권역별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제 시행 대비 설명회 추진('25.6.)